

## 재형저축(집합투자증권)약관

2015. 9. 1 개정

2016.1.6 개정

2016.5.17 개정

**제 1 조(약관의 목적)** 이 약관은 저축자와 판매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재형저축(집합투자증권)(이하 “재형저축”이라 한다) 계약에 적용되며,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에 따른다.

**제 2 조(재형저축의 저축방법 등)** ① 회사는 적립식 저축을 대상으로 재형저축 만을 입·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(거래카드,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한다.

② 재형저축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재형저축통장으로 거래되며, 회사는 재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·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“재형저축”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.

**제 3 조(재형저축의 가입)** ①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2.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②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,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 8 조제 1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

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. 다만, 저축자가 사망, 해외장기출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**제 4 조(저축대상 상품)** 재형저축 가입대상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([www.kebhana.com](http://www.kebhana.com)) >> 금융상품물 >> 펀드 >> 펀드자료실 >> 재형저축 집합투자증권)에 고지하기로 한다.

**제 5 조(저축한도)** 저축자는 분기별 300 만원 이내(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.

**제 6 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** ①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은 신규 매입 체결일 기준으로 2015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②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 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 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1 회에 한하여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 7 조(비과세)** ①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. 또한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.

② 재형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(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)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 8 조(인출 등 처리)** ① 저축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감면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세액이 추징된다.

1.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자의 경우 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이 되는 날

가.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 천 5 백만원 이하인 저축자

나. 제 3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천 6 백만원 이하인 저축자

다.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(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)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로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 세 이상 29 세 이하인 저축자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 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.)

2. 제 1 호 외의 저축자의 경우 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

② 저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제 2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.

1. 저축자의 사망·해외이주
2. 천재·지변
3. 저축자의 퇴직
4. 사업장의 폐업
5. 저축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
6. 회사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③ 저축자가 제 2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 9 조(양도제한 등)** 저축자는 재형저축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재형저축에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)을 설정하거나,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**제 10 조(거래제한)** ①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

**제 11 조(재형저축 자료의 정보제공)**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에 저축자별 재형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를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(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)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회사는 저축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형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 12 조(약관의 변경 등)**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」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저축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 13 조(관계법규 등 준수)**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,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(이하 "관계법규등"이라 한다)을 준수한다.

**제 14 조(분쟁조정)**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,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**제 15 조(관할법원)**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 16 조(기타)**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부 칙(1)

개정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개정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